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화〉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Ⅲ. 검토의견: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화

- 개정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정비 요청이나 타 행정기관 소관 규제 관련 의견 제출 시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 요청이나 제17조의2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7조·제10조¹⁾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이하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성 등을 판단하여 법령안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34조²⁾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점검·평가, 제19조³⁾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기존 규제 자체 정비 등 규제 재검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구체적 방법론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제17조제1항⁴⁾에 따른 국민의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의²⁵⁾에 따른 타 기관 규제 관련 의견 제출 시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규제심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취지로 보임.

-
- 2)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3)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4)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기존 규제의 정책목적 달성 수준을 확인하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⁶⁾
- 다만, 개정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의2에 따른 타 기관 규제 관련 의견 제출 시에 의무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도한 재정 및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한 평가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을 현행법 제18조⁷⁾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와 제8조⁸⁾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6) 국무조정실은 202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시범사업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7)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목록

□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선정 방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등을 대상으로,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효과성을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실시

□ 2023~2024년도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사업 목록

연도	부처명	법령명
2023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3조)
	고용부	안전보건교육규정(전체)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2조)
	관세청	수입환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전체)
	교육부	교과용도서예에 관한 규정(제33조)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국가유산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시행규칙(제4조)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1조)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해수부	선박직원법(제2조)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연도	부처명	법령명
2024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4,8,10조)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과기부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3조1, 제24조)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
	행안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자료: 국무조정실)